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‘유효기간’을 ‘재검토기한’으로 개정함.

◇ 주요내용

가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‘유효기간’을 ‘재검토기한’으로 하고, 그 기간을 정함(안 제17조)